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54
----------	------

2025년 4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신동원 의원(찬성 35명)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신동원 의원)

1. 제안이유

-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함.

2. 주요내용

-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 (제4조의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2025.4.5.~4.9.) 결과 :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조례안의 개요

- 서울시는 2023년도부터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개성있고 의미있는 결혼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서울마이웨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와 서울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자(자영업자 포함)까지 확대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대관료 감면 지원대상 확대 (안 제1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신설)

-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예식장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 ----- <u>시설의 대관료</u> ----- ----- -----. 1.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u> 2. <u>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u> 3. <u>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

- 서울시 조혼인율¹⁾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세종, 경기 다음 네 번째로 높은 편이나, 서울 기준 혼인건수는 2015년 64,193건에서 2024년 42,471건으로 33.8% 감소하였음.
- 2024년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

1)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식장 기본금액은 서울 지역이 평균 1,96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추가금액도 평균 46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고비용의 결혼문화는 결혼 당사자와 그들 부모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켜 청년층의 만혼 또는 비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²⁾.
- 따라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을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결혼 당사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주민등록을 둔 경우와 서울 소재 직장(자영업자 포함)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생활권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가정의례)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향후 공공예식장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예약이 몰리는 대관시설에

2) 국민일보, 김용현 기자, 결혼식 한 번에 5000만원...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플레이션, 2024.2.7.

대해서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예약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집행기관 의견(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소관부서는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저출생 극복 및 건전혼례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3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에 참여시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임.
-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사람까지 시설 대관료 감면대상을 넓혀 공공예식장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신동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5
명)

1. 제안이유

-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 (제4조의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를 “시설의 대관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u>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u> ----- ----- <u>시설의 대관료</u> ----- ----- --.
<u><신 설></u>	<u>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u>
<u><신 설></u>	<u>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u>
<u><신 설></u>	<u>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이 발생하나 해당 대상자에 대한 통계정보가 적어 현재로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자체추계 또한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해당 대상자에 대한 **현황정보가 적어** 현재 수집가능한 정보¹⁾를 근거로 추계하기에는 **추계객관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
 - **[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을 추정하려면 늘어나는 대상의 연간 공공예식장 이용횟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결혼적령기²⁾의 서울소재 직장인, 자영업자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간접적 산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감소분과 차이가 클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공공예식장 이용현황 정보 필요]** 서울시 관련부서(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문의결과 현재 재직자에 관한 정보는 파악되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아, 해당 규정에 의해 감소될 세외수입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5년 서울시내 직장 재직자의 공공예식장 예약 현황(2025년 3월말 기준)

- 예약건수 : 총 17건

- 세부내용 : 북서울꿈의숲(69,710원) 9건, 시립대 자작마루(480,000원) 6건, 한강공원물빛무대(오전, 1백만원) 1건, 매현 시민의숲(64,350원) 1건

2) **[예식장 수요 고려]** 예식장 수요가 가장 많은 나이대를 기준으로 간접적 산출